#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96 발의연월일: 2024. 10. 31.

발 의 자:진선미・이기헌・문정복

임광현 • 윤종군 • 김한규

채현일 • 모경종 • 정동영

조 국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활동의 특성상 납, 카드뮴 등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은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발병할 소지가 있어 퇴직소방공무원은 각종 질병에 시달릴 확률이 높은 것인 현실임.

이에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었거나 위험업무에 종사한 소방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① 소방청장 또는 시·도 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퇴직 후 10년간 제16조제1항에 따 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시기·기간·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는 소방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3조의2(퇴직소방공무원의 특
	수건강진단) 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
	에 대하여 퇴직 후 10년간 제1
	6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u>을 실시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의 대상・시기・기간・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